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구자근・김종양・김기현

조경태 · 임이자 · 우재준

김장겸 • 박성민 • 유상범
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·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·공상군경·무 공수훈자·보훈보상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 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,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, 참전명 예수당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 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, 참 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 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삭제).
- 나.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(안 제6조제7항).
- 다.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).
- 라.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수당지급 대상자가"를 "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"로 한다.

제6조제7항 중 "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그 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

제7조제1항 중 "참전유공자가"를 "참전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참전유공자의"를 "참전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"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 ①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할인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국가보훈	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
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	
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	
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	
급한다. <u>다만, 참전명예수당을</u>	<u><단서 삭제></u>
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	
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	
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	
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	
지급한다.	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	<u><</u> 삭 제>
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	
제4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	
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	
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	
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	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	<u><삭 제></u>
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	
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	
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	
지급받는 경우	
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 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
 지급받는 경우
- ③ (생 략)
-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[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체신관서(이하 "체신관서"라 한다) 또는 「은 행법」에 따른 은행(이하 "은 행"이라 한다)의 계좌를 말한 다. 이하 같다]에 입금하는 방 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정보통 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 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⑤ ~ ⑥ (생 략)
-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 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액 등은

< 사	제>
\ \ -i	_/II/
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참전명예수</u>
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
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-
<u>.</u>
⑤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기 지규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참전명 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 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②・③ (생 략)

제7조(의료지원) ① <u>참전유공자가</u>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 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<u>참전유</u> <u>공자의</u>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

	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	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
	최저생계비로 정한다.
제	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
	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
	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
	권리가 승계된다.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7조(의료지원) ① <u>참전유공자,</u>
	그 유족 또는 가족이
	② <u>참</u>
	전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

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부담한다.

③ (생 략) <신 설>

·.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10조의2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
- ①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·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1 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 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다.